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09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 : 2016. 8. 31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SH공사의 변경된 사명을 반영하고, 다소 중복되는 일부 자구를 조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에스에이치(SH)공사의 사명을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변경하고, 내용이 중복되는 일부 자구를 조정함(안 제5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).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4조제3항제2호 중 “에스에이치(SH)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, 같은 항 제3호 중 “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(다만,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한다)”를 “(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한다)”로 수정한다.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><u>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 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(다만,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한다)</u></p>	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 <u>(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한다)</u></p>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2항 중 “지역안에서”를 “지역 안에서”로 한다.

제5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”를 “제1항에도”로 하고, 제5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.

제54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, 한국토지주택(LH)공사,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학교이적지가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·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는 경우
3. 개발이 완료된 학교이적지에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(다만,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한다)

제54조제1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도”를 “제1항에도”로 하고, “120퍼센트이하”를 “120퍼센트 이하”로 한다.

제5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”를 “제1항에도”로 하고, “각호”를

“각 호”로 하며 같은 항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상업지역: 500퍼센트
2. 준주거지역: 320퍼센트
3. 전용주거지역: 100퍼센트
4. 제1종일반주거지역: 120퍼센트
5. 제2종일반주거지역: 160퍼센트
6. 제3종일반주거지역: 200퍼센트

제55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”를 “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”로 하고, “상업지역안에서”를 “상업지역 안에서”로 한다.

제55조제3항제1호 중 “ 도시환경정비구역중”을 “도시환경정비구역중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적용례) 제54조제3항제1호 및 제55조제2항 단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이전한 학교이적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4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<u>지역안에서</u>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③ 도시계획시설인 학교(유치원은 제외한다)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학교(유치원은 제외한다)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한 부지(이하 "학교이적지"라 한다)는 <u>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. 다만,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는 제1항을 적용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54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 <u>지역 안에서</u> _____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_____</p> <p>— <u>제1항에도</u> _____ 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.</u></p> <p>1. <u>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</u></p> <p>2. <u>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, 한국토지주택(LH)공사, 서울주택도시공사</u>가 소유하는 학교이적지가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·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는 경우</p> <p>3. <u>개발이 완료된 학교이적지에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및 같은 법 시행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④~⑫ (생략)</p> <p>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 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<u>120퍼센트</u>이하로 한다.</p> <p>제55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. 다만, 이 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는 제1항을 적용한다.</p> <p>가. 상업지역 : 500퍼센트</p> <p>나. 준주거지역 : 300퍼센트</p> <p>다.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: 100퍼센트</p> <p>라. 제2종일반주거지역 : 150퍼센트</p> <p>마. 제3종일반주거지역 : 200퍼센트</p> <p>③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제31조 제1항제1호,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복합건물 (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</p>	<p><u>령 제90조의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(다만,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한다)</u></p> <p>④~⑫ (현행과 같음)</p> <p>⑬ 제1항에도 _____ _____ _____ <u>120퍼센트</u> 이하_____.</p> <p>제55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도 _____ _____ _____ <u>각 호</u> _____ _____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상업지역 : 500퍼센트 2. 준주거지역 : 320퍼센트 3. 전용주거지역 : 100퍼센트 4. 제1종일반주거지역 : 120퍼센트 5. 제2종일반주거지역 : 160퍼센트 6. 제3종일반주거지역 : 200퍼센트 <p>③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_____<u>상업지역 안에서</u> _____ _____ _____</p>

